##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699 발의연월일: 2020. 9. 9.

발 의 자:전용기・이학영・안호영

서삼석・오영환・송갑석

장경태・임종성・허 영

김수흥 · 최승재 · 김윤덕

김경협 · 강선우 · 임오경

최혜영 • 박홍근 • 양향자

전재수 · 신정훈 · 유재갑

임호선 · 양경숙 의원

(23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국가 방역 정책이 2.5단계로 강화되면서 영업장일시 폐쇄와 영업 시간 제한 등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작년 대비 90%까지살아났던 경기 상승세가 다시 가라앉았고, 자영업자들의 경제 사정이 다시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임대료 부담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호소에 부응하여 정부는 착한 임대료 운동을 독려하고자 임대차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세제혜택을 마련한 바 있음. 그러나 그 특례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혜택이 이어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가임대차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조세특례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의3제1항 중 "2020년 6월 30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①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	
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u>202</u>	<u>2020</u>
<u>0년 6월 30일</u> 까지(이하 이 조에	<u>년 12월 31일</u>
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	
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	
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	
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	
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